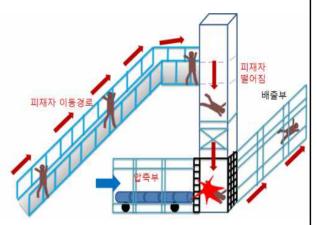
폐지 압축기에 끼임

재 해 개 요

'14. 11월 충북 청원군 소재 폐지 압축장의 압축기 호퍼 주변에서 피재자가 압축기 호퍼에 걸려있는 폐지를 제거하던 중 폐지압축기 내로 떨어지면서 압축기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(폐지압축기)

재해상황도

재해발생상황

○ 재해는 호퍼 입구에 폐지가 걸리자 피재자가 경사컨베이어를 거슬러 올라 호퍼입구를 살펴보던 중 압축기 내부로 떨어져 발생함

※기인물(폐지압축기)

- 모델 : 제작품(6HP×2), - 크기 : 11,200mm × 6,800mm, - 제작년도 : 2011년

- 처리속도 : 약 3분 내외/Cycle, - 자동철밴딩 및 절단

- 호퍼 내 감지센서에 의해 경사컨베이어는 자동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음
- 호퍼 입구 및 내부의 폐지 막힘이 제거되자 순간적으로 컨베이어가 가동 되면서 피재자가 압축기 내부로 떨어졌으며, 압축기의 푸셔가 동작하여 폐지와 함께 압착되었을 것으로 추정

재해발생 원인

○ 폐지 압축기가 불시에 작동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나, 사전에 기계 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

(감지센서에 의해 기계가 자동 정지된 상태로 복구 시 자동으로 재기동함)

○ 호퍼입구 개구부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 태에서 작업을 실시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호퍼 입구의 폐지 막힘 또는 내부의 막힘으로 인한 폐지 제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
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 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

관련 법규
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 -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·수송기계·건설기계 등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러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 -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(이하 이 조에서 "난간등"이라 한다)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,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